

< 2024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고 >

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기반 조성과 글로벌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「2024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국내 의료기관,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 및 연관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일
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: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
- 사업목적: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현지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및 진출기관 역량 강화 기반 마련
- 사업기간: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15일(금)까지

2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신청기간: 2024.7.1.(월) ~ 2024.7.15.(월)
- 신청방법: 사업 담당자 이메일(internship@khidi.or.kr)로 신청 접수

3. 지원대상

-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*,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 또는 의약품, 의료기기, 정보시스템 등 관련 분야 연관산업체 및 산업체 컨소시엄 중 신규인턴 채용 수요가 있는 기관

구 분	내 용
의료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음을 요건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은 필히 충족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의료법」 제3조 규정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「의료법」 제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「의료법」 제33조 2항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
연관산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진출사업 추진이 가능한 국내 유관기관(의료기기, 의료IT, 병원컨설팅 등)
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건계열 학과 개설 대학원, 협회, 학회 등

* 국내 모기관이 없는 해외 의료기관의 경우 국내에 기반을 둔 컨소시엄을 통해 신청 가능

** (신규 인턴) 당해 연도에 채용된 일종의 단기 계약 고용형태로, 각 기관에서 정식 채용에 앞서 업무 역량, 적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로 자체적으로 채용되는 인력

*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의 의료 해외진출 범위

가.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·운영
 나.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
 다.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
 라.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
 마.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, 의료기기 등의 제공
 바.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4. 지원내용

○ (지원범위) 협약일 이후 채용된 신규인턴에 대한 국내·외 실무 교육 훈련비, 운영비, 국내·외 여비 등

* 참여대상의 프로젝트 국고보조금 지원 외 정산 및 회계 검증 등 위탁회계수수료 지원

구 분	[track 1] 글로벌 의료인력 양성 프로젝트	[track 2] 의료 해외진출 기반 조성 인턴십 프로젝트										
국고보조금 지원금	최대 50백만원 지원	진출국가의 금지*에 따라 참여인턴 별 9-15백만원 지원										
참여인턴 수	10명 내외	제한 없음										
프로젝트 예시	'00대학원 미국 치과위생사 진출 프로젝트' 대학원생 10명, 국고보조금 지원금 최대 50백만원	'00병원 타지카스탄 건강검진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채용 9백만원 x 5명 = 45백만원										
필수조건	해외 네트워크(의료기관, 사단법인, 대학교 등)에서 해외 현지 실습(임상)교육 필수											
비고	1. 국고보조금 사업은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해서 예산집행 및 정산 수행 2. 지원사업 관리자 및 예산 집행·정산 담당직원 필수 ◆ 진출국가별 해외체재비 차등 지원(공무원 여비 지급기준)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>금지별</th> <th>"가"금지</th> <th>"나"금지</th> <th>"다"금지</th> <th>"라"금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해외체류비</td> <td>15백만원</td> <td>13백만원</td> <td>11백만원</td> <td>9백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금지별	"가"금지	"나"금지	"다"금지	"라"금지	해외체류비	15백만원	13백만원	11백만원	9백만원
금지별	"가"금지	"나"금지	"다"금지	"라"금지								
해외체류비	15백만원	13백만원	11백만원	9백만원								

- (지원규모) 신청기관은 하단의 트랙별 구분과 지원내용을 고려하여 규모에 부합되는 트랙을 선택하여 지원

구 분	지원대상(주관기관)	지원내용	지원사업 결과물
[track 1] 글로벌 의료인력 양성 프로젝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건계열 학과 개설 대학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글로벌 의료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규인턴 대상 기간제 및 정규직 채용 근로계약서 ■ 인턴십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■ 인턴십 만족도 결과보고서
[track 2] 의료 해외진출 기반 조성 인턴십 프로젝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내 의료기관 ■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 (협회, 학회) ■ 그 외 연관산업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시 의료인력 동반 진출 지원 ■ 의료 해외진출 기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의료 해외진출 사업의 성과물 공유(환자수, 매출액 등) ■ 신규인턴 대상 기간제 및 정규직 채용 근로계약서 ■ 인턴십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■ 인턴십 만족도 결과보고서

- (참여조건) 참여기관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
 - 참여기관에서 프로젝트에 적합한 신규인턴을 직접 모집 및 채용
 - 신규인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, 보건계열 학과 대학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,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, 그 외 기타 보건의료인력* 등 이어야 함

<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>

가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* 및 간호조무사
 * 의료인: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·간호사
 나.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
 다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료기사,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
 * 의료기사: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
 라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급구조사

* (기타 보건의료인력) 의료기관 연관산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건행정, 의료 경영, 원무, 마케팅 등의 종사자

5. 사업 운영절차 및 평가방법

○ 사업운영 절차

< 지원프로세스 및 일정 >

구분	주요 내용
신청.접수 (24.7.1.~7.15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공고) KOHES 홈페이지(https://www.khidi.or.kr/kohes) 공지사항 ■ (신청) 이메일(internship@khidi.or.kr)로 신청서 접수
↓	
선정평가 (7월 3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계획 서류평가 및 기관 발표평가 *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
↓	
최종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종 선정 결과 통보, 주관기관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* 사업계획, 추진일정 및 사업예산 등 최종수정
↓	
협약 (~7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협약 체결 ■ 국고보조금 1차(70%) 교부
↓	
중간점검 (9월~10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간보고서 제출 ■ 국고보조금 2차(30%) 교부
↓	
최종평가 및 사업종료(11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결과보고서 제출 ■ 사업비 정산

○ (평가방법)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점 순위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 선정

구분	심 사 항 목		배점 기준
과제 매력도 (40점)	대상국가 및 과제 매력도	· 진출 대상국가 시장 매력도, 중요성 등	20점
	사업 타당성	· 인턴십 프로젝트의 적정성 · 신규 채용 인력에 배정된 직무의 필요성과 적합성 · 글로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·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	20점
신청 기관 현황 (10점)	투입인력 편성/인력현황	· 신규 인력 운영 전담 인력 업무구성 계획 · 사업 책임자, 프로젝트 관리자의 해외사업 수행 경험 등	5점
	수행기관 현황	· 제안사 유사사업 수행 경력 및 실적 · 인력현황, 경영실적, 매출액 및 대외인지도 등	5점
기대 효과 (50점)	일자리 창출	· 인턴의 기간제 또는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연계 계획	20점
	프로젝트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	· 향후 인턴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안 · 인턴십 프로젝트 추진과 향후 의료 해외진출 사업과의 연계 계획	30점
가산점 (최대 5점)	가산점	항 목	
	3점	- 2023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우수 프로젝트 수행 기관	
	2점	-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채용연계 이행기관('21-'23)	
	2점	- '의료해외진출법'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록 의료기관과 컨소시엄	
	1점	-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(KAHF) 인증기관 - 수도권(서울·경기) 외 지방소재 의료기관, 보건전문기관, 연관산업체	
총 합계			100점

6.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 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취소 및 국고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(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)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, 공모참가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
-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지원사업 신청관련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임
- 신규인턴의 동일대학(학사, 석사, 박사 포함)출신이 총 인원의 50%를 초과 할 수 없음
- 결과보고서는 사업수행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, 지원사업의 산출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유해야함
 - * 인턴십 프로젝트의 만족도 조사, 모니터링,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함
-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,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- 불성실 납세 기관 신청 불가
 - * 사업 주관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의무 제출
- 당해 프로젝트가 보건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*에 선정되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, 본 사업 최종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 - *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등
- 신청기관의 임직원과 신규 채용된 인턴이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*가 아니어야 함
 - *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 및 친생자
- 근로조건은 참여기관과 인턴 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
 - * 참여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하며, 근로관계가 성립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·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됨

7. 향후일정

○ 세부 추진 일정

구분	추진일정						
	사업공고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세부 일정	사업공고 및 접수, 지원기관 선정 (24.7.1.~7.15.)	참여기관 사업수행(약 6개월) 협약체결 및 국고보조금 1차 교부(7월) → 사업착수 → 중간점검(8월) → 국고보조금 2차 교부(9월) → 협약 종료(11.15.) → 최종평가(11월 중) → 정산 및 만족도 조사 실시(1차: 11.30., 2차: 차년도 3월)					사후관리 및 e나라도움 정산

*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8. 문의처
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의료해외진출기획팀 김현진
책임연구원 (internship@khidi.or.kr/043-713-8957)

9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1	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	서식 1
2	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세부사업 요약	서식 2
3	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기관 별 채용 예정 명단	서식 3
4	제출 공문	서식 4
5	지원서약서	서식 5
6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서식 6
7	사업자등록증 각 1부 -주관기관, 컨소시엄, 해외 네트워크(해외 교육·실습기관, 채용 예정 의료기관)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-사업자등록체계가 없는 국가는 온라인 기업인증(D-U-N-S® Number) 등 대체 서류 제출	-
8	법인등기부등본 1부(개인사업자는 미제출)	-
9	법인인감증명서 1부	-
10-1.	국세	총 3부
10-2.	지방세	
10-3.	4대보험 완납증명서	
11	사업추진 증빙서류	-
12	가산점 증빙서류	-
13	재무제표 또는 정기결산서	-